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(K-IFRS) 일부 기준서 제정 및 개정 확정

왕양비 연구원

- 지난 28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(IFRS) '종업원 급여' 및 '공정가치 측정' 관련 기준서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의 채택이 최종 확정되었음.

-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종전에 K-IFRS 제 1019호 기준서가 임금상승률,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(보험수리적 손익)에 대해서 당기인식과 이연인식[1]을 모두 허용했으나, 금번 개정을 통해서 기타포괄손익계정으로 당기인식하도록 일원화함(〈그림 1〉 참고).
  - 퇴직연금 보험수리적 손익의 당기인식 개정으로 순퇴직급여부채 증감액(과거근무원가)의 인식시점도 조건 충족 시까지의 평균잔여기간 동안 안분 인식하는 것에서 즉시 인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.
  - 이외에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산정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하는 대신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산정 시와 동일하게 우량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됨.

- 금번 기준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기준에 복수의 기준서를 따르던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단일 기준서로 통합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규명됨.
  - 개정된 기준서에 따르면,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유출가격(exit price)을 가리킴.

---

1) 이연인식은 퇴직급여채무의 10%를 초과하는 증감액분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회계적 처리방법임. 이는 범위접근방법(corridor method)이라고 하는데, 규모가 크고 수익변동이 심한 퇴직연금의 일정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이 범위(corridor)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예상평균잔여근무시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처리방법임.

* Corridor= Max(기초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, 사외적립자산 현재가치)×10%

- 개정된 기준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해당 자산의 '최고 최선의 사용(highest and best use)'가정을 적용하며,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에는 측정일에 측정대상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한 것으로 규정함.
- 동 기준서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채무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접근법, 이익접근법 등 적당한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서열체계(fair value hierarchy)도 제시하였음.

■ 금번 K-IFRS의 제정 및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,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혔음.

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가 2010년 이래 발표한 12개 IFRS 중 5개가 한국에서 채택 완료된 상황이며, 나머지 연결 관련 기준서는 시행시기에 대한 국제적 논의경과를 지켜본 후 채택 시기를 결정될 예정임.

〈그림 1〉 개정 전 · 후 보험수리적손익 회계처리 기준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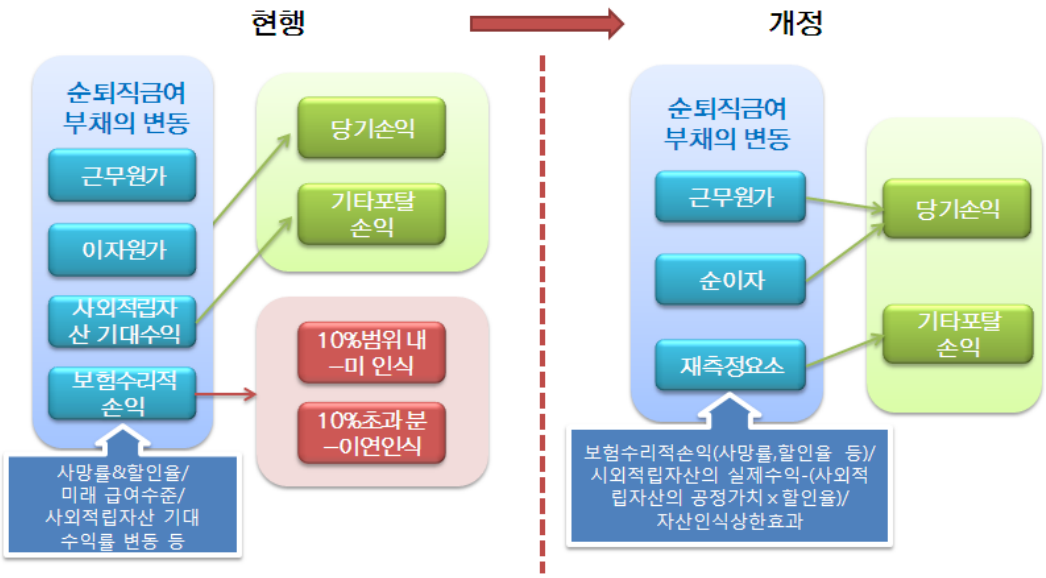

자료: 금융위원회.

(금융위원회, 12/29)